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결과(2000.2.25~2000.3.16) 결과,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중요규제사무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동수)

- 본 조례안은 '93년 7월 3일 제정되어 '99년 5월 10일 8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금번 조례개정은 중소기업육성정책에 맞추어 서울형 신산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강화하고, 기금의 용자대상 확대 및 용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자금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 내지 제4조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범위와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추가에 대하여
- 안 제8조 운전자금의 용자대상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 안 제12조 시설자금 용자대상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유통업·건설업·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 운전자금지원조건을 연간매출액의 1/4범위내에서 1/2로 완화하고, 용자한도액 또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은 중소기업청의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지침과 서울시장방침인 200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강화계획을 근거로 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 다만,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지원규모를 100억원 이내에서 200억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건설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건설장비구입비 또는 임차비 등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 관광호텔업에 대한 호텔건설 증·개축비를 10억원 이내 개보수비를 5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마지막으로 200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이 3,000억원(운전자금 1,700억원, 시설자금 1,300억원)으로 2000년 4월 11일 현재 계획대비 승인비율은 13.14%인 394억 1,400만원으로 다소 저조하게 보이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조건 및 기준완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및 연간매출액이 높은 우량기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담보물(대출시 : 현시가의 약 80% 하는 감평가에 해당은행에서 약 60~70% 하향 적용함)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안책이 필요하며, 대출금리 또한 시중은행과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므로,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 보완하여 보다 나은 자금지원 효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0명,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산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6
----------	-----

2000. 5.
기획경제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4월 24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산업경제국장 임재오)
 - 가. 제안이유
최근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수

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실업문제의 해소까지는 아직 요원하여 지속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실업대책위원회를 1년간 연장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실업대책을 수행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함.(안 부칙)
-운영기한 : 2000. 6. 30 → 2001. 6. 30

다. 참고사항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의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합 의 : 기획예산실과 합의되었음.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00. 3. 6 ~ 3. 27) 결과,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동수)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에 근거하여 '98년 8월 20일 제정, '99년 6월 30일 1차개정('99.6.30~2000.6.30)되어 서울특별시 실업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는 한시기구로서

○ 위원회현황을 살펴보면, 위원장 2인(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 : 공동위원장제)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되어 실업대책본부 및 5개 분과위원회(실업대책, 저소득시민, 생산·일용직, 사무·전문직, 청년·여성소위원회)를 구성,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설치, 도시정보화 추진,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주택경기 활성화대책, 공공근로인력 중소기업체 지원, 공공근로사업 모

니터링 등 전체회의 21회, 소위원회 회의 35회, 모니터링 6회 개최하였으며, '98년 5개 분과 위원회에서 '99년 3개 분과 위원회(실업정책, 공공근로사업, 청년·여성위원회)로 축소 운영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기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수는 다소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실업문제해소까지는 아직 요원하여 실업대책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실업대책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0명,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0	2000. 5. 기획경제위원회
----------	-----	---------------------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4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

가. 제안이유

담배사업법의 개정('99. 12. 31)에 따라 국가사무에서 시·도지사의 사무로 이양된 「제조담배도매업」에 관한 사무와 폐기물 관리법개정('99. 8. 9)에 따라 신설된 「폐기물재활용」 신고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